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8
------	------

2016. 8. 3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6일,
맹진영의원의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6.8.3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맹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사회투자기금 운용 현황

-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설치되었으며, 서울시(이하 “시”)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중간지원기관 융자사업,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평균 1.2%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참고자료1].

- 시는 당초 출연금 500억원과 500억원의 민간자금 모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민간조성 자금이 173억원에 그쳐 총 699억원의 기금을 운용 중임.

〈 사회투자기금 현황 〉

(단위: 원)

총 기금	시 출연금	민간조성자금		
		계	기부금	중간지원협력
699억	526억	173억	31억	142억

- 특히, 민간 조성 자금의 경우 순수 기부금은 약 31억원에 불과하고, 142억원은 기금과 2:1 혹은 3:1의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협력기관 투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민간 조성 자금 상세내역 〉

(단위: 억원)

연도	구분	모금액	민간조성자금 상세내역
〈 합계 〉		173	- 연도별 : 13년 133억, 14년 29억, 15년 9억, 16년 2억 - 재원별 : 중간지원협력 142억, 기부금 31.2억
'13	기부금	30.4	- 우리은행(30억), 시민기부(4천만원)
	중간지원협력	102.9	〈7개 기관〉 - 아이쿱 30억, 에너지나눔과 평화 25억, 신나는 조합 5억, 행복중심생협 3억, (주)쏘카 24.9억, 북서울신협 10억, (주)해피브릿지 5억
'14	기부금	0.56	- 개인/기업/단체 (56백만원)
	중간지원협력	28	〈6개 기관〉 - 루트임팩트 3.5억, (주)쏘카 15.1억, 동작신협 5억, 신나는 조합 2억, 논골신협 2억, (사)서대문사람숲 0.4억
'15	기부금	0.28	- 개인/기업/단체 (28백만원)
	중간지원협력	9.17	〈5개 기관〉 - 신나는조합 2억, (주)크레비스 0.17억, (주)HG이니셔티브 3억, 동행 1억, 동작신협 3억

'16 상반기	중간지원 협력	1.9	〈2개 기관〉 - 신나는조합 0.9억, 한국사회혁신금융(주) 1억
------------	------------	-----	---

- 시는 기금의 수요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2015년 146억 1,200만원, 2016년 7월까지 106억 3,200만원을 융자하였고, 기금설치 이래 100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총 436억 3,2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음.

〈 사회투자기금 융자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융 자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까지)
합계	43,632	10,900	7,488	14,612	10,632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15,320	10,290	2,800	1,850	380
소셜하우징융자사업	14,605	310	4,012	5,003	5,280
사회주택활성화융자	493	-	-	-	493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10,309	-	500	5,711	4,098
소셜임팩트본드 융자사업	300	300	-	-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605	-	176	2,048	381

- 기금은 현재 (재)한국사회투자에서 위탁운용 중(위탁기간: '15.1 ~'16.12)에 있으며, 기금의 전면 민간위탁을 불허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시 직영 관리체제로 전환할 예정임.

다. 존속기한의 연장

-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에 따라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후인,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 시는 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요 4개 기관의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평균 1.2%, 주요 정책자금 평균금리 3.25%)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제한적인 타 정책자금에 비해 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정책자금 비교〉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사회투자자금	330	109	75	146
주요 정책자금 (주요 4개 기관 합)	163.9	51.8	61.3	50.8

※ 주요 4개 기관 : 서울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대표적인 시의 혁신정

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확대와 사회주택 공급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실적 변화〉

- 매출액 (지원 전) 1,081억원 → (지원 후, '15년말) 2,315억원 (1,234억원 증가)
- 일자리 (지원 전) 737개 → (지원 후, '15년말) 1,158개 (421개 증가)
- 주택공급 (지원 전) 0세대 → (지원 후, '15년말) 103세대 (103세대 증가)

- 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적 프로젝트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데 반해 사업여건의 불확실성이나 재정여건의 취약에 따라 시의 정책적 지원이 상당기간 필요한 사정을 고려할 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따라 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기금의 자체수입 증가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의 출연금 추가 지원이나 민간 재원과의 협력사업 비중 확대 등 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시의 노력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8
----------	------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6일

발 의 자 : 맹진영, 권미경, 김기대,
김용석(도봉), 김인제, 김종욱,
김진철, 김희걸, 우창윤,
우형찬, 이윤희, 최웅식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6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p>	<p>제12조(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p>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맹진영